
개정 산안법 시행(‘20.1.16.자)에 따른
도급금자·도급승인 제도 운영지침

‘19. 12.



[순 서]

I. 배경 및 목적	1
II. 기본방향 및 주요내용	2
III. 세부지침	3
1. 도급금지 예외 규정 해석기준	3
2. 도급승인 예외 기준	9
3. 긴급한 도급의 경우 절차 간소화	11
4.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13
5. 신고대상 작업의 하도급 금지 규정 해석	21
6. 도급승인 관련 이의제기 절차	22
7. 도급금지 등 의무 위반에 따른 과징금	23
V. 행정사항	26
 [붙임1] 관계 법령	24
[붙임2] 도급승인 기준	35
[붙임3] 안전·보건에 관한 평가보고서 작성요령	37
[붙임4] 도급승인 절차 안내문(신청인 배포용, 예시)	38
[붙임5] 도급승인 심사를 위한 기술사항 확인결과 보고(양식)	39
[붙임6] 유해·위험작업 도급승인 심사보고서(양식)	64

- 하청 노동자 안전보건관리 강화를 위한 원청의 책임 확대,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유해·위험작업 도급제한 등의 제도 개선 내용을 포함한 산업 안전보건법 전부개정이 완료('19.1.15. 공포, '20.1.16. 시행)됨에 따라
 - 유해·위험성이 높고 단기간에 직업병 발견이 어려운 도급작업, 수은 · 납 · 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작업, 허가물질 제조·사용작업은 사내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 * 일시·간헐적인 작업, 수급인의 기술이 전문적이고 사업주의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는 도급금지 예외
 -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 취급 설비의 개조 분해·해체·철거작업 또는 해당 설비 내부 작업의 사내도급은 미리 안전 보건조치 후 승인^{**}을 받도록 함
- 그러나, 법령에는 도급금지 및 도급승인의 예외를 둔다는 규정과 도급 승인을 받으려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미비한 상황
 - 따라서 도급금지 및 도급승인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를 명확히 하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도급금지 및 도급승인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기본방향 >

- ◆ (도급제한) 도급금지 및 도급승인 제도 운영을 위한 명확한 해석기준 마련
- ◆ (안전·보건평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의 방법, 내용, 수행기관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의 구체적인 시행방안 마련

① (도급금지 예외 기준*) 도급금지의 예외로서 일시·간헐 작업과 수급인의 기술이 전문적이고 도급인의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법 제58조제2항)

② (도급승인 예외* 기준) 도급승인 예외 요건으로서 해당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 하였다는 증명방법 및 지방관서 확인 절차 등 마련(시행령 제51조제1호)

*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 취급 설비 개조·분해·해체·철거작업 또는 해당 설비 내부 작업은 도급승인 대상이나 해당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하고 신고한 경우 예외

③ (긴급한 도급 절차 간소화*) 도급승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경우로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어 긴급하게 도급을 해야 할 경우에 대한 기준 마련(시행규칙 제80조제2항)

* 도급승인 신청 시 ①도급대상 작업 공정 서류, ②도급작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③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나, 긴급하게 도급을 해야 할 경우 안전보건관리계획서만 제출 가능(공정 서류, 안전보건평가 생략)

④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시행규칙 제76조)의 구체적인 방법, 내용, 평가 수행기관, 공단의 기술사항 확인 등을 명시

⑤ 도급승인 대상 작업 하도급 금지의 구체적인 내용 정함

⑥ 도급승인 신청이 처리기한 내에 승인되지 않을 경우(시행규칙 제77조제4항)
이의제기 절차 마련

⑦ 도급금지 및 도급승인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최대 10억원) 부과 시 위반 기간 및 횟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이행 노력도, 산재발생 빈도 고려

1 도급금지 예외 규정 해석기준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금작업
2.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의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3.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② 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1. 일시·간헐적으로 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2.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사업주(수급인에게 도급을 한 도급인으로서의 사업주를 말한다)의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 해석기준

○ 일시·간헐 작업 도급금지 예외의 기본원칙은 상시인력 고용이 어려운 사정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임

- * 일시적 작업은 그 수요가 갑자기 발생하여 상시인력 고용이 불가능한 경우, 간헐적 작업은 작업의 수요는 예측이 되나, 오랜 기간의 간격을 두고 발생하여 상시인력 고용이 어려운 경우임
- 상시인력 고용이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일시적 작업’은 ‘30일 이내 종료되는 1회성 작업’으로 ‘간헐적 작업’은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으로 제한

○ ‘전문적 기술’이란 도급인이 습득·보유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기술임이 특허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로 해석

○ ‘필수 불가결’이란 해당 기술이 없다면 도급인의 전체 사업 중 도급과 관련된 사업의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로 해석

□ 일시 · 간헐적 작업

- (취지) 작업 수요 예측이 불가능하여 상시 인력을 두기 어렵거나, 전문 인력 채용에 시간이 소요되어 작업시기를 놓칠 경우 오히려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작업은 도급이 필요
- (유사 입법례) 『파견법』에서도 일시적 · 간헐적 인력확보가 필요한 경우 파견금지 예외 인정하나 구체적 기준은 하위규정에 명시하지 않음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5조(근로자 파견 대상업무 등) ①근로자 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 · 기술 · 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 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산 · 질병 · 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 ·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있다.

- 행정해석을 통해 갑작스런 주문증가, 생산계획 변경 등 예측이 불가능한 요인으로 발생한 업무로서 기존 인력으로 대처가 어려운 경우로 봄(연중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아야 함)
- (관련 행정규칙)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과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에서 '단기간 작업'과 '간헐적 작업' 정의
 - *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8-73호) 및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8-13)에서는
⇒ '단기간 작업'이란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 '간헐적 작업'이란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으로 정의
- '단기간 작업'과 '간헐적 작업'에 대해서는 산안법상 의무를 경감 또는 면제

규정	내용	목적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단기간 작업, 간헐적 작업에 대해서는 특별안전보건 교육 단축 실시	의무 경감
근골격계부담작업 고시	단기간 작업, 간헐적 작업에 대해서는 유해요인조사 의무 면제	의무 면제
개정 산안법 제58조제1항	일시적, 간헐적 작업에 대해서는 도급금지 예외	금지 해제

- (일시·간헐 작업 사례 조사) 현행 도급인가 사업장에 전화 인터뷰 조사 실시
 - 일시·간헐적 작업을 도급할 경우로는 도금, 수은·납·카드뮴 제련 작업은 해당 없으나, 허가대상물질의 경우 촉매 교체 작업이 해당됨

- | |
|---|
| ① 도금은 갑작스런 주문으로 일시적인 수요가 있을 경우 발생할 수 있으나 그런 사례는 많지 않을 것임
② 수은, 납, 카드뮴 제련 등의 작업은 도급 시 장기간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해야 할 작업이므로 일시·간헐적 도급은 가능하지 않음
③ 허가대상물질 비소화합물 촉매 교체 작업은 10개월마다 하는데, 특수장비가 필요하여 도급하며, 통상 작업기간은 40일* 소요
* 황화니켈화합물 촉매 교체는 4년마다 하며, 통상 20명을 투입하여 20일 소요 |
|---|

- (공단 의견) 도금작업이나 수은, 납, 카드뮴 제련 등의 작업은 일시·간헐적으로 도급할 경우 거의 없으나, 허가대상물질 제조·사용은 촉매 교체 작업이 해당하며 작업에 필요한 기간은 30일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
 - * 촉매 교체 작업은 탱크에서 사용 촉매를 제거 후 새 촉매를 채우는 작업으로 난이도가 매우 높은 작업은 아니나, 기후나 돌발상황으로 지연될 경우를 대비하여 순수 작업일수(M-day)로는 20일, 기간으로는 30일을 부여하는 것이 적정
 - 그러나, 촉매 교체 작업은 10개월마다 수행할 경우 연간 작업일수가 30일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허용 기간을 30일에 맞추면 오히려 수급인 노동자의 안전보건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어 적정 기간 확보가 필요함
- (검토 결과) 상시인력 고용이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 작업으로서 ‘일시적 작업’은 ‘30일 이내 종료되는 1회성 작업’으로 ‘간헐적 작업’은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으로 규정

□ 전문적인 기술

- (취지) 도급금지는 도급인이 직접 할 수 있는 작업을 위험 회피 및 인건비 절감 목적으로 도급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도급인이 해당 기술을 습득·보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도급을 허용
 - * ‘전문적’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그 일을 잘하는”
- (유사 입법례) ‘전문적’을 정의한 법률은 없으나, ‘기술’에 대해서는 여러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음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기술'이란 특허*, 실용신안(實用新案)** 등 지식재산을 의미

* 특허권: 공업 소유권의 하나, 특허법 · 실용신안법 · 의장법에 의하여 발명 · 실용신안 · 의장에 관하여 독점적 · 배타적으로 가지는 지배권

** 실용신안: 특허법상 보호대상인 '발명'이라는 고도의 기술에 가려서 사장되기 쉬운 소발명인 '고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이 민간부문으로 이전되어 사업화되는 것을 촉진하고, 민간부문에서 개발된 기술이 원활히 거래되고 사업화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 · 추진함으로써 산업 전반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출원(出願)된 특허, 실용신안(實用新案), 디자인,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및 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
- 나. 가목의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資本財)
- 다. 가목 또는 나목의 기술에 관한 정보
-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시행령: 제2조(기술의 정의) 법 제2조 제1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이전 및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적 · 과학적 또는 산업적 노하우를 말한다.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산업기술'이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기술*을 의미

* 「산업발전법」상 고시된 첨단기술, 「산업기술혁신촉진법」상 인증된 신기술, 「전력기술관리법」상 지정 · 고시된 새로운 전력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상 인증된 신기술, 「건설기술진흥법」상 지정 · 고시된 신기술 등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기술"이라 함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 · 생산 · 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해당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 · 단체의장을 말한다)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대통령령 · 총리령 · 부령)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지정 · 고시 · 공고 · 인증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가. 제9조에 따라 고시된 국가핵심기술

나.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 라.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새로운 전력기술
- 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 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새로운 건설기술
- 사.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에 따라 인증된 보건신기술
- 아.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핵심 뿌리기술
- 자. 그 밖의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기술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기술

- 이를 종합해보면, 기술이란 독점적·배타적 권리를 가지는 지식재산으로 지정·고시·공고·인증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것을 의미
- (검토 결과) '전문적 기술'이란 도급인이 습득·보유하기 어려운 기술로서 도급금지 예외를 허용할 만한 전문성이 특허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기술*을 의미
 - * 특허, 실용신안, 지정, 고시, 공고, 인증, 기술도입 계약, 장비제조사 등 전문성이 객관적인 외부지표로 확인 가능해야 할 것임
- (재심청구절차) 제도 운영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도급인이 습득·보유하기 어려운 전문적 기술' 인지 판단에 대해 재심청구 시 위원회(노사가 추천한 전문가 포함)를 구성하여 재심하는 절차 마련(사업주, 노동조합 신청 가능)

□ 도급인의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기술

- (취지) 도급금지 예외는 유해 작업의 도급을 허용하는 것이므로 도급인이 수급인의 기술을 습득·보유하기 어려운 점이 인정되더라도 그 기술이 도급인의 사업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
- (유사 입법례) 『파견법』 등에서 사업 허가를 취소하였음에도 계속 사업하는 경우 사업폐쇄를 위해 사업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봉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필수불가결'이란 '사업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여 그것이 없다면 사업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로 해석됨

* '필수불가결'이란 내용을 포함한 법률은 「공중위생관리법」, 「농어촌정비법」, 「모자보건법」, 「파견법」 등이며, 이들 모두 공중위생업, 민박사업, 산후조리업, 파견사업 등에 대해 사업폐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무원에게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조치 규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폐쇄조치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후 계속하여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업을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1. 당해 사무소 또는 사무실의 간판 기타 영업표지물의 제거 · 삭제
2. 당해 사업이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의 부착
3. 당해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 다만, 여기서 ‘사업’이란 도급인의 전체 사업이 아니라 ‘도급작업과 관련된 사업’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함이 타당
- (검토 결과) ‘필수 불가결한’이란 해당 기술이 없다면 도급인의 전체 사업 중 도급과 관련된 사업의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함
 - “필수 불가결한 경우”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제출하는 증빙자료로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 대표의 의견을 참고
- (재심청구절차) 제도 운영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도급인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인지 판단에 대해 재심청구 시 위원회(노사가 추천한 전문가 포함)를 구성하여 재심하는 절차 마련(사업주, 노동조합 신청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

제51조(도급승인 대상작업) 법 제5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같은 사업장 내에서 도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1.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다만, **도급인이 해당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한 후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 화학물질 제거 및 측정방법

- (제거 방법) 배관·설비 등 화학물질 제거(Draining) → 초순수·용수 및 질소 등을 사용 잔여물, 치환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배관·설비 세척 및 치환
- (측정 방법) 화학물질을 제거할 때에는 최소한 다음의 측정기준에 따라 유해가스 농도 측정 필요

1) 직접 물질에 접촉시켜 가스 농도를 측정하는 경우<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

- ① 해당 화학물질 가스농도측정기(교정성적서 必) 준비
→ 질소 등 불활성 기체로 치환하는 경우 산소농도측정기(교정성적서 必) 추가 준비
- ② 탱크 등 깊은 장소의 농도를 측정하는 경우 고무호스나 PVC로 된 채기관을 사용하여 깊이 측정
* 채기관 1m마다 작은 눈금으로, 5m마다 큰 눈금으로 표시 여부 확인
- ③ 유해가스(불활성기체 치환시 산소농도 포함)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면적 및 깊이를 고려하고, 노출이 우려되며 취약한 설비를 골고루 측정*
* 굴곡부 또는 플랜지 등 해체작업 시 화학물질 유출 우려 있는 곳은 배관 등을 이격시켜 측정

<측정을 위한 조건 및 유의사항>

- (1) 측정기는 유지보수관리를 통하여 정확도, 정밀도를 유지
- (2) 측정기의 사용 및 취급방법, 유지 및 보수방법 충분히 습득
- (3) 가스농도 측정기를 사용할 때 측정 전 기준농도, 경보설정농도 교정
- (4) 공기호흡기와 송기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를 필요시 착용
- (5) 긴급사태에 대비 측정자의 보조자를 배치, 보조자 또한 보호구 착용, 구명밧줄 준비
- (6) 측정에 필요한 장비 등은 방폭형 구조로 된 것을 사용

2) PH Meter로 측정하는 경우<불산, 질산, 염산, 황산(액상)>

① 해당물질의 세척이 끝난 후 PH Meter를 이용하여 PH 기준의 중성 확인*

* 적정한 시간 간격으로 반복하여 3회 이상 측정 결과가 중성(『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청정지역 수소이온농도(PH 5.8 ~ 8.6) 기준 참조)

↳ 물 또는 초순수 등으로 세정할 경우 해당 설비에 부식 및 설비 손상 등으로 누출, 화학 물질 간 혼합위험성으로 화재·폭발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적정한 세정방법 사용

② 해당 배관 직경, 길이 등을 고려, 노출이 우려되며 취약한 설비를 골고루 측정*

* 굴곡부 또는 플랜지 등 해체작업 시 화학물질 유출 우려 있는 곳은 배관 등을 이격시켜 측정

□ 화학물질 제거 증빙서류 등

- (증명자료) ① 안전작업 절차서 및 작업구간, 세정방법 등을 포함한 내용, ② 화학물질 제거 전·후 현장사진, ③ pH meter 검증 자료(황산, 불산, 염산, 황산, 질산(액상)) 또는 가스검지기 측정결과(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가스 검지기 교정성적서 포함)

* 가스농도 측정결과 값이 불검출(Not Detected)이어야 함

※ 질소 등 불활성기체로 치환작업 시 산소농도 적정수준(18%이상 23.5% 미만) 증빙

- (신고 및 수리절차) 도급인은 해당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하였음을 문서로 지방노동관서에 제출(증빙서류 포함) * 신고 형식 자유(우편, e-mail, Fax 등)

- 지방관서는 신고서가 이 지침에서 정한 화학물질 제거 및 측정 방법을 준수하고,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춘 경우 수리 통지, 그렇지 않은 경우 반려*

* 증빙서류 미비인 경우 보완 요구, 해당 화학물질이 모두 제거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반려

- (작업개시) 지방노동관서에서 신고서를 수리한 경우 도급작업 개시

-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사업주는 도급승인 제외를 적용받는 경우에도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한 내용은 준수하여야 하며, 도급인은 자기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책임*을 지게 되므로 적격 수급인**을 선정***해야 함

* 개정법 제167조, 제169조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안전 및 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시 수급인과 동일하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 적격 수급인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른 화학물질 취급 설비 개조·분해·해체·철거작업(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3 산업·환경설비 공사업)의 시공능력과 실적이 있는 사업자(건설업 이외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도급 사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상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A등급 이상)를 말함

*** 개정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안 】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① 법 제5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에 대한 승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도급승인 신청서, 별지 제32호서식의 연장신청서 및 별지 제33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급대상 작업의 공정 관련 서류 일체(기계·설비의 종류 및 운전조건, 유해·위험물질의 종류·사용량, 유해·위험요인의 발생 실태 및 종사 근로자 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도급작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작업절차, 도급 시 안전·보건관리 및 도급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변경승인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어 긴급하게 도급을 해야 할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 긴급하게 도급을 해야 할 경우 승인절차 간소화

-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어 긴급하게 도급을 해야 할 경우에는 도급작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만 첨부하여 도급승인 신청 가능

* 도급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는 ①도급대상 작업의 공정 관련 서류 일체, ②도급작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③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이나,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어 긴급하게 도급을 해야 할 경우에는 도급 공정 관련 서류 일체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 제출 생략

-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은 다양한 상황과 유해·위험요인으로 구체적 정의가 어려우나, 자의적인 업무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기준 마련 필요

* (참고) 기존 행정해석 :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라 함은 압력용기의 압력 급상승으로 폭발이 예상되는 경우 등 긴급 대피하지 않으면 즉시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가 위험에 처하게 되는 상태를 말함(안정 68320-905, 2000.8.24.)

** (참고) 작업중지 요건 : ①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토사·구축물의 붕괴, 화재·폭발, 유해·위험 물질의 누출 등으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그 재해가 발생한 장소 주변으로 산업 재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

□ 긴급하게 도급을 해야 할 경우에 대한 기준

-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라도 미리 안전보건조치 완료 후 도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긴급하게 도급 작업을 수행하지 않으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상황을 기준으로 설정해야 함
- 산업재해의 위험은 중대재해 또는 그에 준하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해발생 장소 주변으로 산업재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 긴급하게 해야 할 작업은 즉시 조치하지 않으면 안 될 작업으로서 특별한 기술 또는 전문인력 등이 필요하여 도급인이 직접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임
- PSM 사업장의 비정상 상태는 비상대응절차에 따라 조치하고, 일반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해서는 화학물질안전관리시스템으로 관리체계 만들 계획

[예시]

1. 화학물질 취급공정에서 부속설비의 심각한 고장, 변형 등에 대한 조치를 긴급하게 도급하지 않으면 중대산업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

전문업체가 긴급하게 해당 설비를 개·보수(개조·분해·해체·철거 또는 설비 내부에서의 작업)하지 않으면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주변으로 산업재해가 확산될 수 있는 상황

* 중대산업사고 : 유해 · 위험설비로부터 위험물질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설비에서의 누출 · 화재 · 폭발 사고, 인근 지역 주민이 인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설비 누출 · 화재 · 폭발 사고)

2. 화학물질의 가스 · 증기 · 분진 밀폐 · 차단 설비 또는 배기장치의 미설치, 고장에 대한 조치를 긴급하게 도급하지 않으면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

전문업체가 긴급하게 화학물질 밀폐·차단 설비 또는 배기장치를 설치하거나 보수(개조·분해·해체·철거 또는 설비 내부 작업)하지 않으면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주변으로 산업재해가 확산될 수 있는 상황

-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지방관서와 공단은 신속하게 현장을 방문, 승인 여부를 검토^{*}하여 최단기 내 승인 여부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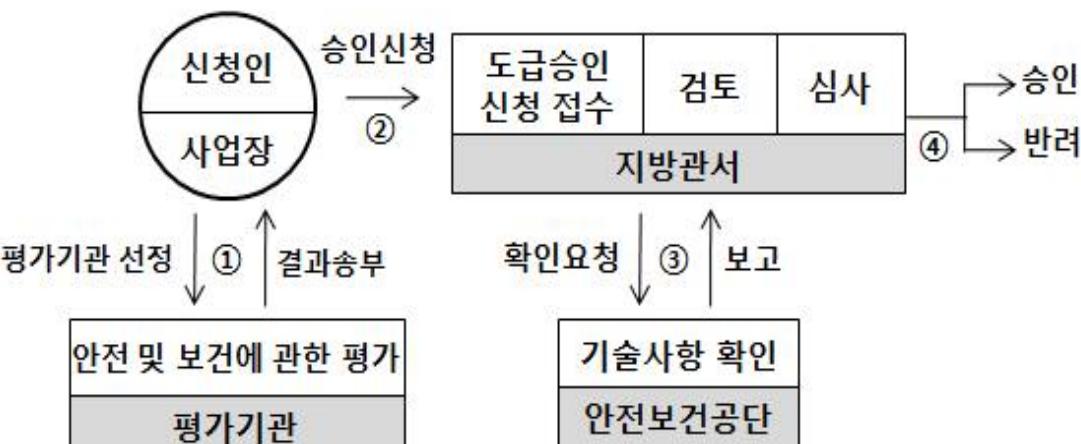
* ① 즉시 작업하지 않을 경우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② 그 작업을 도급인이 직접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되는지 여부, ③ 안전보건관리계획서가 적정하지 여부

□ 도급승인 절차

- 신청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위탁기관을 통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고 관할 지방관서에 도급승인 신청** (처리기한 14일)

* 도급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는 ①도급대상 작업의 공정 관련 서류 일체, ②도급작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③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

< 참고 : 도급승인 단계별 세부절차 >



- 신청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평가기관*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실시를 의뢰

* 현재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의거 안전보건공단, 대한산업안전 협회, 대한산업보건협회, 한국건설안전협회 4개가 평가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음

- 신청인과 평가기관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와 관련한 평가대상(장소·작업 등), 평가일정, 평가수수료* 등에 대해 협의 및 평가계약 체결

* 평가수수료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9호(유해작업 도급인가시 안전·보건평가 수수료)에 따름

- 평가기관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결과(평가보고서)를 신청인에게 즉시 송부하고, 신청인은 평가결과를 첨부하여 지방관서에 도급승인 신청

○ 관할 지방관서는 도급승인 기준을 충족한 경우 도급승인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함

- 관할 지방관서는 도급승인 신청서가 접수되는 즉시 기술사항 확인을 관할 안전보건공단(지역본부·지사)에 의뢰하고,
- 공단은 기술사항 확인 후 그 결과를 「도급승인 심사를 위한 기술사항 확인결과 보고」 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관할 지방관서에 보고

※ 안전·보건평가를 안전보건공단이 수행한 경우에는 동 공단의 ‘기술사항 확인’을 면제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지방관서에서 직접 확인을 실시

평가수행 기관	안전보건공단의 ‘기술사항 확인’ 실시 여부
안전보건공단	면제 가능
타 평가기관	실시 (서류검토·현장점검 등을 통한 평가결과 확인)

- 관할 지방관서는 신청서류 내용, 안전·보건평가결과 및 안전보건공단의 기술사항 확인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급승인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승인

* 도급승인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그 이유를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통보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음도 안내)

- 관할 지방관서는 도급공정 관련 서류, 도급작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를 심사 후 「도급승인 심사보고서」 작성

※ 지방관서는 도급승인 기준에 미흡한 사항이 즉시 개선 가능하여 보완 등의 사유로 도급승인 처리기한(14일) 내 승인 심사가 곤란한 경우 ‘민원처리기한 연장’ 처리를 할 수 있음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시행방안

○ (평가항목) ①종합평가(안전·보건평가), ②안전평가, ③보건평가로 구분

종 류	평 가 항 목 (시행규칙 별표 12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의 내용)
종합 평가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2.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ol style="list-style-type: none">가. 기계·기구 또는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성나.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 등에 의한 위험성다. 전기·열 또는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성라. 추락, 붕괴, 낙하, 비래 등으로 인한 위험성마. 그 밖에 기계·기구·설비·장치·구축물·시설물·원재료 및 공정 등에 의한 위험성바. 영 제88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관리 대상 유해물질 및 온도·습도·환기·소음·진동·분진,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 또는 위험성3. 보호구, 안전·보건장비 및 작업환경 개선시설의 적정성4. 유해물질의 사용·보관·저장,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근로자 교육 및 경고표시 부착의 적정성5.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능력의 적정성6. 그 밖에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 유지·증진 등 보건관리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안전 평가	종합평가 항목 중 제1호·제2호 중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 및 제3호 중 안전 관련 사항, 제5호의 사항
보건 평가	종합평가 항목 중 제1호의 사항, 제2호 중 바목의 사항, 제3호 중 보건 관련 사항, 제4호, 제5호 및 제6호의 사항

※ 세부 평가항목별로 평가 내용 작성, 최종 의견('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등)첨부

-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조치에 대한 평가 외에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능력도 평가*하도록 함

* 종합평가 항목 5호: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체제(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 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선임관계 등), 건강검진,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등

- 법 제58조제1항제1호(도금작업) 제2호(수은·납·카드뮴 제련·주입·가공·가열작업) 및 제3호(허가대상물질 제조·사용작업)의 작업은 **직업병 발생 위험이 높은 작업**이므로 **보건평가를 실시***
- 법 제59조제1항(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 취급 설비의 개조·분해·해체·철거 작업 및 해당 설비 내부 작업)은 **직업병 및 사고성 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작업**이므로 **종합평가를 실시**

<도급승인 대상작업 별 평가종류>

도급승인 대상작업	평가종류
– 도금작업	
– 수은, 납, 카드뮴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보건평가
–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종합평가
– 그 밖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 ※ 2019년 10월 현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작업 없음	–

○ 세부평가내용

- 도급작업 / 수은 · 납 · 카드뮴 제련 · 주입 · 가공 · 가열작업(법 제58조 제1항제1호, 제2호)

〈보건평가의 평가항목 · 세부평가내용 구성(I)〉

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
1.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작업표준(작업안전수칙, 작업절차서)의 적절성 현장의 작업환경(상태)과 작업방법(행동·절차)의 적절성 등
2.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바.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관리 대상 유해물질 및 온도·습도·환기·소음·진동·분진,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 또는 위험성	<도급승인 기준(안전보건규칙) 관련 사항> 제5조 오염된 바닥의 세척 등, 제7조 채광 및 조명, 제8조 조도, 제10조 작업장의 창문, 제11조 작업장의 출입구, 제17조 비상구의 설치, 제19조 경보용 설비 등, 제21조 통로의 조명, 제22조 통로의 설치, 제72조 후드, 제73조 덕트, 제74조 배풍기, 제75조 배기구, 제76조 배기의 처리, 제77조 전체환기장치, 제78조 환기장치의 가동, 제83조 가스 등의 발산억제조치, 제84조 공기의 부피와 환기, 제85조 잔재물 등의 처리, 제225조 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시의 조치, 제232조 폭발 또는 화재 등 예방, 제299조 독성이 있는 물질 누출 방지, 제301조 전기 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제302조 전기 기계·기구 접지, 제303조 전기 기계·기구의 적정 설치 등, 제304조 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 방지, 제305조 과전류 차단장치, 제422조 관리대상 유해물질과 관계되는 설비, 제429조 국소배기장치의 성능, 제430조 전체환기장치의 성능 등, 제431조 작업장의 바닥, 제432조 부식의 방지조치, 제433조 누출의 방지조치, 제434조 경보설비 등, 제435조 긴급 차단장치의 설치 등, 제513조 소음 감소 조치
3. 보호구, 안전·보건장비 및 작업환경 개선시설의 적정성	<도급승인 기준(안전보건규칙) 관련 사항> 제33조 보호구의 관리, 제450조 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등, 제451조 보호복 등의 비치 등
4. 유해물질의 사용·보관·저장,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근로자 교육 및 경고표시 부착의 적정성	<도급승인 기준(안전보건규칙) 관련 사항> 제442조 명칭등의 게시, 제443조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저장, 제444조 빈 용기 등의 관리 <산안법 및 동법 시행규칙 관련 사항> 산안법 제111조, 제114조, 제115조 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게시·교육·경고표시, 시행규칙 제84조제3항 안전보건교육 장소 및 자료 제공, 시행규칙 제85조제1항 안전보건 정보제공 등
5.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능력의 적절성	<산안법 및 동법 시행규칙 관련 사항> 법 제16조 관리감독자, 제17조 안전관리자, 제18조 보건관리자, 제19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특별교육), 제129조 일반건강진단, 제130조 특수건강진단 등
6. 그 밖에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 유지·증진 등 보건관리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도급승인 기준(안전보건규칙) 관련 사항> 제79조 휴게시설, 제81조 수면장소 등의 설치, 제448조 세척시설 등

- 허가대상 유해물질 제조 · 사용작업(법 제58조제1항제3호)

<보건평가의 평가항목 · 세부평가내용 구성(II)>

보건평가의 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
1.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작업표준(작업안전수칙, 작업절차서)의 적절성 현장의 작업환경(상태)과 작업방법(행동·절차)의 적절성 등
2. 유해 · 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바.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허가대상 유해물질,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관리 대상 유해물질 및 온도 · 습도 · 환기 · 소음 · 진동 · 분진,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 또는 위험성	<도급인가기준(안전보건규칙) 관련 사항> 제5조 오염된 바닥의 세척 등, 제7조 채광 및 조명, 제8조 조도, 제10조 작업장의 창문, 제11조 작업장의 출입구, 제17조 비상구의 설치, 제19조 경보용 설비 등, 제21조 통로의 조명 제22조 통로의 설치, 제72조 후드, 제73조 덕트, 제74조 배풍기, 제75조 배기구, 제76조 배기의 처리, 제77조 전체환기장치, 제78조 환기장치의 가동, 제83조 가스 등의 발산억제조치, 제84조 공기의 부피와 환기, 제85조 잔재물 등의 처리, 제225조 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시의 조치, 제232조 폭발 또는 화재 등 예방, 제299조 독성이 있는 물질 누출 방지 제301조 전기 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제302조 전기 기계기구의 접지 제303조 전기 기계기구의 적정설치 등, 제304조 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 방지 제305조 과전류 차단장치, 제453조 설비기준 등, 제454조 국소배기장치의 설치 · 성능, 제455조 배출액의 처리
	(베릴륨작업에만 적용) 제471조 설비기준 제472조 아크로에 대한 조치, 제473조 가열응착 제품 등의 추출 제474조 가열응착 제품 등의 파쇄 제513조 소음 감소 조치
3. 보호구, 안전 · 보건장비 및 작업환경 개선시설의 적정성	<도급인가기준(안전보건규칙) 관련 사항> 제33조 보호구의 관리, 제469조 방독마스크의 지급 등 제470조 보호복 등의 비치
4. 유해물질의 사용 · 보관 · 저장,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근로자 교육 및 경고표시 부착의 적정성	<도급인가기준(안전보건규칙) 관련 사항> 제459조 명칭 등의 게시, 제461조 용기 등 제463조 잠금장치 등, 제466조 누출 시 조치 <산안법 및 동법 시행규칙 관련 사항> 산안법 제111조, 제114조, 제115조 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게시·교육·경고표시 시행규칙 제84조제3항 안전보건교육 장소 및 자료 제공 시행규칙 제85조제1항 안전보건 정보제공 등
5.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능력의 적절성	<산안법 및 동법 시행규칙 관련 사항> 법 제16조 관리감독자, 제17조 안전관리자, 제18조 보건관리자, 제19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특별교육), 제129조 일반건강진단, 제130조 특수건강진단 등
6. 그 밖에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 유지 · 증진 등 보건관리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도급인가기준(안전보건규칙) 관련 사항> 제79조 휴게시설, 제81조 수면장소 등의 설치 제464조 목욕설비 등, 제465조 긴급 세척시설 등

- 황산·불화수소·질산·염화수소 취급설비 개조 등 작업(법 제59조제1항)

<종합평가의 평가항목 · 세부평가내용 구성>

보건평가의 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
1.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작업표준(작업안전수칙, 작업절차서)의 적절성 현장의 작업환경(상태)과 작업방법(행동·절차)의 적절성
2.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바.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관리 대상 유해물질 및 온도·습도·환기·소음·진동·분진,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 또는 위험성	<도급승인 기준(안전보건규칙) 관련 사항> 제5조 오염된 바닥의 세척 등, 제7조 채광 및 조명, 제8조 조도, 제10조 작업장의 창문, 제11조 작업장의 출입구, 제17조 비상구의 설치, 제19조 경보용 설비 등, 제21조 통로의 조명, 제22조 통로의 설치, 제42조 추락의 방지, 제43조 개구부 등 방호조치, 제44조 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제72조 후드, 제73조 덕트, 제74조 배풍기, 제75조 배기구, 제76조 배기의 처리, 제77조 전체환기장치, 제78조 환기장치의 가동, 제83조 가스 등의 발산억제조치, 제84조 공기의 부피와 환기, 제85조 잔재물 등의 처리, 제225조 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시의 조치, 제232조 폭발 또는 화재 등 예방, 제297조 부식성 액체 압송설비 제298조 공기 외의 가스사용 제한, 제299조 독성이 있는 물질 누출 방지 제301조 전기 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제302조 전기 기계기구 접지 제303조 전기 기계기구 적정설치 등, 제304조 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 방지 제305조 과전류 차단장치 제422조 관리대상 유해물질과 관계되는 설비 제429조 국소배기장치의 성능, 제430조 전체환기장치의 성능 등 제431조 작업장의 바닥, 제432조 부식의 방지조치 제433조 누출의 방지조치, 제434조 경보설비 등 제435조 긴급 차단장치의 설치 등, 제513조 소음 감소 조치 제619조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시행 등, 제620조 환기 등 제630조 불활성기체의 누출, 제631조 불활성기체의 유입 방지
3. 보호구, 안전·보건장비 및 작업환경 개선시설의 적정성	<도급승인 기준(안전보건규칙) 관련 사항> 제33조 보호구의 관리, 제450조 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등, 제451조 보호복 등의 비치 등, 제624조 안전대 등, 제625조 대피용 기구 비치
4. 유해물질의 사용·보관·저장,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근로자 교육 및 경고표시 부착의 적정성	<도급승인 기준(안전보건규칙) 관련 사항> 제442조 명칭등의 게시, 제443조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저장, 제444조 빈 용기 등의 관리 <산안법 및 동법 시행규칙 관련 사항> 산안법 제111조, 제114조, 제115조 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게시·교육·경고표시 시행규칙 제84조제3항 안전보건교육 장소 및 자료 제공 시행규칙 제85조제1항 안전보건 정보제공 등
5.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능력의 적절성	<산안법 및 동법 시행규칙 관련 사항> 법 제16조 관리감독자, 제17조 안전관리자, 제18조 보건관리자, 제19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특별교육), 제129조 일반건강진단, 제130조 특수건강진단 등
6. 그 밖에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 유지·증진 등 보건관리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도급승인 기준(안전보건규칙) 관련 사항> 제79조 휴게시설, 제81조 수면장소 등의 설치, 제448조 세척시설 등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기관

- 안전·보건평가 업무 위탁기관은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 함(법 제65조제2항)

- *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고시」(고용부고시 제2017-38호)에서 안전·보건평가 업무 위탁기관은 ①안전·보건진단기관 또는 ②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작업환경측정기관은 안전·보건평가 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삭제할 계획(고시 개정)
 - 현재 고용부 고시 및 공고^{*}에 의거 4개 기관^{**}이 안전·보건평가분야의 평가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음
 - * 「산업안전보건업무 위탁기관 지정 현황」(고용부 공고 제2017-241호)

** 안전보건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대한산업보건협회, 한국건설안전협회

- 도급승인 대상 작업별로 안전보건진단기관 구분

-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 제련·주입·가공·가열작업, 허가대상물질 제조·사용작업은 보건분야 안전보건진단기관이 수행
- 중량비율 1% 이상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 취급 설비 개조·분해·해체·철거 작업 또는 해당 설비 내부 작업은 안전분야 또는 보건분야 안전보건진단기관 모두 수행 가능
 - * 안전보건진단기관은 진단업무 지정인력 외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수행 인력(보건은 위생, 안전은 산업안전, 화공, 전기기사 이상)을 추가 확보(채용 또는 촉탁)하여 수행 가능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수수료

- 관련근거: 산안법 제166조, 시행규칙 제251조,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9호
- 수수료 산정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유해작업 도급인가시 안전·보건평가 수수료」 규정^{*}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제1장 및 제2장에 따라 평가 수수료를 산정
 - * 「유해작업 도급인가시 안전·보건평가수수료」 고시는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 고시로 통합 예정
- 수수료는 신청인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의뢰한 평가기관에 직접 지급하되, 지급방법은 신청인과 평가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정함

【 산업안전보건법령 】

법 제60조(도급의 승인 시 하도급 금지) 제5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승인, 같은 조 제5항 또는 제6항(제59조제2하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 및 제59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작업을 도급받은 수급인은 그 작업을 하도급할 수 없다.**

시행령 제51조(도급승인 대상작업) 법 제5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1.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소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다만, 도급인이 해당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한 후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 개정법 제60조는 “승인을 받은 작업을 도급받은 수급인은 그 작업을 하도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한 후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도급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하도급 가능
-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사업주는 도급승인 제외를 적용받는 경우에도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한 내용은 준수하여야 하며, 도급인은 자기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책임을 지게 되므로 적격 수급인을 선정*해야 함
 - * 개정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참고] 공단 법률자문 결과 부분 발췌

①시행령 제51조제1호 단서에서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하여 그 증빙으로써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 도급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②도급승인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산안법 제60조의 하도급 금지 대상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문리적 해석상으로 적합하다는 점, ③유해 화학물질이 존재하는 작업에 대한 하도급을 금지하는 것은 그 물질이 가지는 특수한 유해·위험성에 따른 것인데, 그 위험 요소를 제거할 경우 하도급을 금지할 필요성이 줄어든다는 점, ④화학물질 제거를 통한 위험성 통제는 법령을 통해서도 충분히 달성을 할 수 있다는 점, ⑤입법 취지에 따른 목적을 현실적으로 달성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역시 명시된 법령의 해석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도급인이 화학물질 제거완료 작업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하도급 금지 대상 작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임

【 산업안전보건법령 】

시행규칙 제75조(도급승인 등의 절차.방법 및 기준 등) ④ 제1항에 따라 도급승인 신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도급승인 기준을 충족한 경우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 **승인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 도급승인 제도는 원청 사업장에서 일하는 수급인 노동자의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보건조치사항을 승인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 승인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승인서를 발급하고, 승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불승인 사유를 통보하게 되어 있으므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다시 신청할 수 있을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불승인 처분에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
- 이의제기 절차
 - 도급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불승인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문서로 제출, 지방관서는 이의제기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재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
 - * 이의신청은 1회로 한정하고, 이의신청서(별도 양식 없음)에는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함
 - 도급승인 여부를 다시 결정*할 때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 * 최초의 도급승인 기준을 준용하여 심사 실시
 - 또한, 도급승인 여부를 다시 결정할 때에는 도급승인 신청인 사업장의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의 의견을 청취

도급금지 등 의무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 산안법 전면개정으로 도급금지 및 도급승인 위반 시 10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
- 도급금지, 하도급 금지를 위반한 경우와 도급승인 대상 작업을 승인받지 않고 도급한 경우 10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법 제161조제1항)
 - * 현행 도급인가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관련법조항	위반행위	과징금 근거조항
법 제58조 제1항	도급금지 대상 작업*을 도급한 경우 *▲ 도금작업 ▲ 수은·납·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 작업 ▲ 허가물질 제조·사용 작업	법 제161조 제1항제1호
법 제58조 제2항제2호	도급금지 대상이더라도 전문적이고 사업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기술인 경우 승인 받아 도급할 수 있는데, 승인 받지 않고 도급한 경우	법 제161조 제1항제2호
법 제59조 제1항	도급승인 대상 작업*을 승인 받지 않고 도급한 경우 *황산, 불산, 질산, 염산 취급 설비의 개조·분해·해체·철거 작업, 또는 해당 설비 내부 작업	법 제161조 제1항제2호
법 제60조	하도급금지 대상 작업*을 하도급한 경우 *승인 받은 작업의 하도급	법 제161조 제1항제3호

-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도급금액, 기간 및 횟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이행 노력도, 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고려(법 제161조제2항)

□ 과징금 부과기준

- (기본산정) 법률에서 정한 과징금 상한액 10억원에 근사하도록 연간 평균 도급계약 금액의 50/100을 기준으로 산정
 - * '18년 도급인가 사업장 평균 도급금액 1,920백만원의 100분의 50이 상한액 10억원에 근사
 - 도급금지·하도급금지 위반은 연간 도급계약 금액의 50/100으로 하고, 도급승인 위반은 10% 낮춘 40/100으로 정함
- (기본산정의 특례) 도급 위반 작업과 비위반 작업을 일괄도급한 경우 위반작업의 도급금액만으로 산정하고,
 - 구분이 불가능할 경우 총 상시근로자수 투입 비율로 도급금액 추계
 - 도급금지와 도급승인을 함께 위반한 경우 도급금지 위반행위의 도급 금액을 기본산정금액으로 함

○ (조정) 위반기간 및 횟수, 산재예방 노력 등에 따른 과징금 조정

- (1차 조정) 위반기간 및 위반횟수(기본 산정금액의 20~80%)에 따라 가중

위반기간*	가중치	위반 횟수	가중치
1년 이내	-	3년간** 1회 이상	기본 산정금액 × 100분의 20
1년 초과 2년 이내	기본 산정금액 × 100분의 20	3년간 2회 이상	기본 산정금액 × 100분의 50
2년 초과 3년 이내	기본 산정금액 × 100분의 50	3년간 3회 이상	기본 산정금액 × 100분의 80
3년 이상	기본 산정금액 × 100분의 80		

* 위반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까지의 기간

**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간

- (2차 조정)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간 산안법 위반이 없는 경우 1차 조정 금액의 50/100 감경, 산업재해가 1회 이상 발생한 경우 20/100 가중

조치 이행의 노력	감경치
3년간 법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도급인의 의무 사항)에 대한 근로감독관의 점검을 받은 결과 해당 규정 위반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	1차 조정 금액 × 100분의 50
점검을 받지 않은 경우 또는 점검 결과 행정처분 받은 경우	-

산업재해 발생 빈도	가중치
3년간 1회 이상 발생	1차 조정 금액 × 100분의 20
3년간 미발생	-

- 1, 2차 조정을 거쳐 산정된 최종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 상한액인 10억원으로 함

○ (가산금) 과징금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징금의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과

* 법 제161조제3항에 의한 가산금의 범위는 연 100분의 6이므로 1개월 기준은 100분의 6 / 12개월 = 1,000분의 5

【 산업 안전 보건 법령 】

법 제161조(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1. 제58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급한 경우
2. 제58조제2항제2호 또는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도급한 경우
3. 제60조를 위반하여 승인을 받아 도급받은 작업을 재하도급한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도급 금액, 기간 및 횟수 등
2.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
3. 산업재해 발생 여부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과징금을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및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와 제4항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113조(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 ① 법 제161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법 제16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표 34의 과징금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 법 제161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란 과징금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과징금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시행령 제114조(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법 제16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 및 가산금의 부과와 납부에 관하여는 제112조를 준용한다.

□ 본 운영지침 시행일 : '19. 12. 6.(금)

□ 지방관서 및 평가기관의 준비 및 협조사항

○ 공통사항

- 관할 도급승인 대상 작업 수행 사업장에 제도 적극 홍보, 도급승인 절차 등 본 운영지침 내용 숙지 및 신청인 안내자료 준비

○ 지방관서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가 가능한 평가기관(안전보건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대한산업보건협회 등)의 연락망 확보 및 업무절차 공유

※ 지방관서 관할지역을 담당하는 평가기관의 담당자 확인

- 관내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적정 규모의 안전보건진단기관에 지정 신청하도록 안내

- 도급승인 심사결과 도급사업주 의무사항('산안법 및 동법 시행규칙' 관련 사항) 및 기타사항('안전보건진단' 관련 사항)에 문제점이 지적된 경우 적정한 시정기한을 부여하여 이의 개선을 반드시 지도

※ 개선지도 시 소정의 시정기한을 부여하여 개선토록 지도하되 개선여부를 적정한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미 개선시 감독관 집무규정에 의거 조치)

○ 평가기관

- 안전보건평가 담당자 지정 및 자체 운영 규정 및 매뉴얼 등 정비(필요 시)
- 도급승인 신청인으로부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의뢰를 받은 경우 신속히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안전보건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즉시 신청인에게 제공
- 평가보고서는 [붙임4]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보고서 작성요령」에 유의하여 작성

산안법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1. 도금작업

2.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의 제련, 주입, 가공, 가열하는 작업

② 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1. 일시·간헐적으로 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2.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사업주(수급인에게 도급을 한 도급인으로서의 사업주를 말한다)의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③ 사업주는 제2항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승인의 유효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정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사업주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승인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제3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⑥ 사업주는 제2항제2호 또는 제5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제2호,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승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가 제8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승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⑧ 제2항제2호,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승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기준·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안법 제59조(도급의 승인)

①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도급

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에 관하여는 제58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산안법 시행령 제51조(도급승인 대상작업)

법 제5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1.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다만, 도급인이 해당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한 후 증명 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그 밖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

산안법 시행규칙 제74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의 내용 등)

① 법 제5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승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연장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165조제2항, 영 제116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을 통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에 대한 내용은 별표 12에 따른다.

산안법 시행규칙 제75조(도급승인 등의 절차·방법 및 기준 등)

① 법 제5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승인, 같은 조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도급승인 신청서, 별지 제32호서식의 연장신청서 및 별지 제33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급대상 작업의 공정 관련 서류 일체(기계·설비의 종류 및 운전조건, 유해·위험물질의 종류·사용량, 유해·위험요인의 발생 실태 및 종사 근로자 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도급작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작업절차, 도급 시 안전·보건관리 및 도급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제7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법 제58조제6항에 따른 변경승인은 해당되지 않는다)

② 법 제5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승인, 같은 조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작업별 도급승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통: 작업공정의 안전성, 안전보건관리계획 및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의 적정성

2. 법 제5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작업: 안전보건규칙 제5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7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33조, 제72조부터 제79조까지, 제81조,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 제225조, 제232조, 제299조, 제301조부터 제305조까지, 제422조, 제429조부터 제435조까지, 제442조부터 제444조까지, 제448조, 제450조, 제451조, 제513조에서 정한 기준
3. 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작업: 안전보건규칙 제5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7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까지, 제33조, 제72조부터 제79조까지, 제81조,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 제225조, 제232조, 제299조, 제301조부터 제305조까지, 제453조부터 제455조까지, 제459조, 제461조, 제463조부터 제466조까지, 제469조부터 제474조까지, 제513조에서 정한 기준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필요할 경우 법 제5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승인, 같은 조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한 사업장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도급승인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공단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도급승인 신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도급승인 기준을 충족한 경우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 승인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산안법 시행규칙 제76조(도급승인 변경 사항)

법 제58조제6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도급공정
2. 도급공정 사용 최대 유해화학 물질량
3. 도급기간(3년 미만으로 승인 받은 자가 승인일부터 3년 내에서 연장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산안법 시행규칙 제77조(도급승인의 취소)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승인, 같은 조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75조제2항의 도급승인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 연장승인,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3. 법 제58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연장승인 및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을 계속한 경우

산안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① 법 제5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에 대한 승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도급승인 신청서, 별지 제32호서식의 연장신청서 및 별지 제33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급대상 작업의 공정 관련 서류 일체(기계·설비의 종류 및 운전조건, 유해·위험물질의 종류·사용량, 유해·위험요인의 발생 실태 및 종사 근로자 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도급작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작업절차, 도급 시 안전·보건관리 및 도급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변경승인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어 긴급하게 도급을 해야 할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법 제59조에 따른 승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작업별 도급승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통: 작업공정의 안전성, 안전보건관리계획 및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의 적정성
2. 영 제51조제1호에 따른 작업 : 안전보건규칙 제5조, 제7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제11조, 제17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33조,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제72조부터 제79조까지, 제81조,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 제225조, 제232조, 제297조부터 제299조까지, 제301조부터 제305조까지, 제422조, 제429조부터 제435조까지, 제442조부터 제444조까지, 제448조, 제450조, 제451조, 제513조, 제619조, 제620조, 제624조, 제625조, 제630조, 제631조에서 정한 기준
3. 영 제51조제2호에 따른 작업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에 관하여는 제74조를, 도급승인의 절차, 변경 및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75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제76조 및 제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5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승인, 같은 조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은 “법 제59조에 따른 승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으로, “제75조제2항의 도급승인 기준”은 “제78조제3항의 도급승인 기준”으로 본다.

< 시행규칙 별표(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의 내용(제74조제2항 및 제78조제4항 관련)

종 류	평 가 항 목
종합평가	<p>1.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p> <p>2.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p> <p> 가. 기계·기구 또는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성</p> <p> 나.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 등에 의한 위험성</p> <p> 다. 전기·열 또는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성</p> <p> 라. 추락, 붕괴, 낙하, 비래 등으로 인한 위험성</p> <p> 마. 그 밖에 기계·기구·설비·장치·구축물·시설물·원재료 및 공정 등에 의한 위험성</p> <p> 바. 영 <u>제88조에</u>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관리 대상 유해물질 및 온도·습도·환기·소음·진동·분진,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 또는 위험성</p> <p>3. 보호구, 안전·보건장비 및 작업환경 개선시설의 적정성</p> <p>4. 유해물질의 사용·보관·저장,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근로자 교육 및 경고표시 부착의 적정성</p> <p> 가. 화학물질 안전보건 정보의 제공</p> <p> 나. 수급인 안전보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p> <p> 다. 화학물질 경고표시 부착에 관한 사항 등</p> <p>5.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능력의 적정성</p> <p> 가. 안전보건관리체제(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선임관계 등)</p> <p> 나. 건강검진 현황(신규자는 배치전건강진단 실시여부 확인 등)</p> <p> 다.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등</p> <p>6. 그 밖에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 유지·증진 등 보건관리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p>
안전평가	종합평가 항목 중 제1호의 사항, 제2호 중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 및 제3호 중 안전 관련 사항, 제5호의 사항
보건평가	종합평가 항목 중 제1호의 사항, 제2호 중 바목의 사항, 제3호 중 보건 관련 사항, 제4호, 제5호 및 제6호의 사항

* 비고: 세부 평가항목별로 평가 내용을 작성하고, 최종 의견('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등)을 첨부해야 한다.

유해·위험작업 도급승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도급인	사업장 명칭			
	소재지			
	업종	주요생산품		
	대표자 성명	근로자 수		
수급인	사업장 명칭	업종		
	소재지			
	대표자 성명	근로자 수		
도급내용	도급 작업공정	도급공정 근로자수		
	도급공정 사용 최대 유해화학 물질량(월)			
	도급기간			
비고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 제3항, 제5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제1항 및 제78조제1항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 승인을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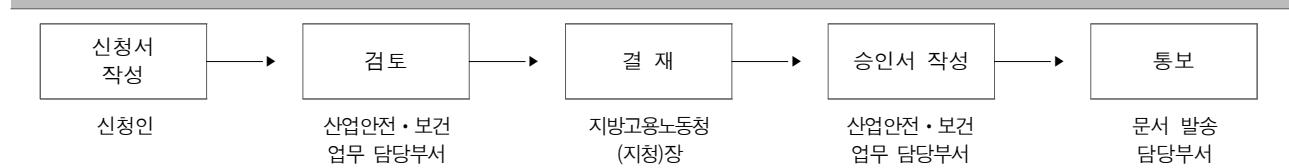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붙임 서류	1. 도급대상 작업의 공정관련 서류 일체(기계·설비의 종류 및 운전조건, 유해·위험물질의 종류·사용량, 유해·위험요인의 발생 실태 및 종사 근로자 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수수료 없음
	2. 도급작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작업절차, 도급 시의 안전·보건관리 및 도급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3.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유해·위험작업 도급승인 연장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도급인	사업장 명칭			
	소재지			
	업종	주요생산품		
	대표자 성명	근로자 수		
수급인	사업장 명칭	업종		
	소재지			
	대표자 성명	근로자 수		
도급내용	도급 작업공정	도급공정 근로자수		
	도급공정 사용 최대 유해화학 물질량(월)			
	도급승인 기간			
	도급승인 연장 기간			
도급연장 사유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제1항 및 제78조제1항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승인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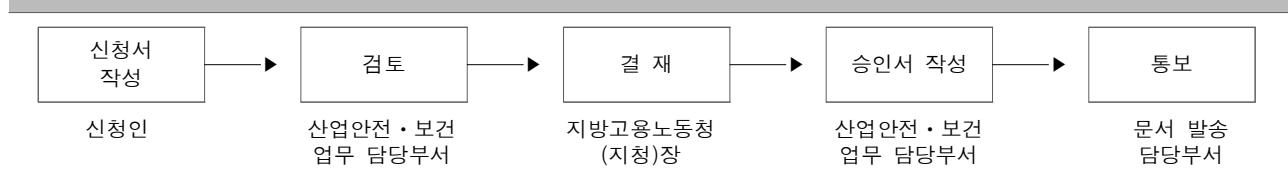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붙임 서류	1. 도급대상 작업의 공정관련 서류 일체(기계·설비의 종류 및 운전조건, 유해·위험물질의 종류·사용량, 유해·위험요인의 발생 실태 및 종사 근로자 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2. 도급작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작업절차, 도급 시의 안전·보건관리 및 도급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3.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유해·위험작업 도급승인 변경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도급인	사업장 명칭			
	소재지			
	업종	주요생산품		
	대표자 성명	근로자 수		
수급인	사업장 명칭	업종		
	소재지			
	대표자 성명	근로자 수		
도급	도급 작업공정	도급공정 근로자수		
	도급공정 사용 최대 유해화학 물질량(월)			
	도급승인 기간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제1항 및 제78조제1항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승인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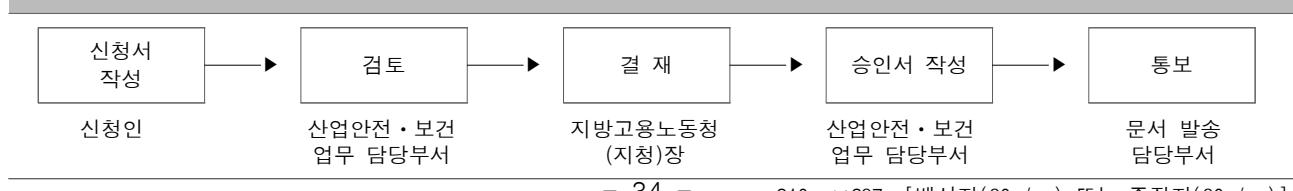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붙임 서류	1. 도급대상 작업의 공정관련 서류 일체(기계·설비의 종류 및 운전조건, 유해·위험물질의 종류·사용량, 유해·위험요인의 발생 실태 및 종사 근로자 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2. 도급작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작업절차, 도급 시의 안전·보건관리 및 도급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유해·위험작업 도급승인서

도급인	사업장 명칭	
	소재지	
	업종	주요 생산품
	대표자	근로자 수
수급인	사업장 명칭	
	소재지	
	업종	주요 생산품
	대표자	근로자 수
도급공정	도급계약기간	
	도급승인기간	
비고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 제5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급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장 직인

□ 개요

- (도급금지) 현행 도급인가 대상 작업*의 도급을 원칙적 금지하되, 일시·간헐적 작업 및 도급인 사업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수급인 기술 활용 목적의 도급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허용(법 제58조)
 - *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작업, 허가대상물질의 제조·사용작업
- (도급승인) 유해·위험 작업 중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도급승인 대상으로 함(법 제59조)
 - *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 취급 설비의 개조·분해·해체·철거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 작업”을 선정할 예정(시행령 제51조)

□ 도급승인 기준

1.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작업 : 작업장 기준(바닥·채광·조도), 환기장치, 휴게시설, 잔재물 등의 조치, 국소 배기장치 성능, 부식·누출 방지조치, 경보·긴급 차단장치 설비, 관리 대상물질 관리(보관 등), 작업방법, 보호구 등 45개
 - ※ 안전보건규칙 제5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7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33조, 제72조~제79조, 제81조, 제83조~제85조, 제225조, 제232조, 제299조, 제301조~제305조, 제513조, **제422조, 제429조~제435조, 제442조~제444조, 제448조, 제450조, 제451조**에서 정한 기준
2. 허가물질의 제조·사용작업 : 작업장 기준(바닥·채광·조도), 환기장치, 휴게시설, 잔재물 등의 조치, 허가물질 취급시 설비기준, 국소배장치 성능, 허가물질 관리(보관 등), 잠금장치, 목욕시설, 긴급 세척시설, 기록 보존, 방독마스크, 베릴륨 취급작업시 조치 등 46개
 - ※ 안전보건규칙 제5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7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33조, 제72조~제79조, 제81조, 제83조~제85조, 제225조, 제232조, 제299조, 제301조~제305조, 제513조, **제453조~제455조, 제459조, 제461조, 제463조~제466조, 제469조~제474조**에서 정한 기준
3. 황산, 불산, 질산, 염산 취급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56개
 - ※ 안전보건규칙 제5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7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33조, 제42조~제44조, 제72조~제79조, 제81조, 제83조~제85조, 제225조, 제232조, 제299조, 제301조~제305조, 제513조, **제422조, 제429조~제435조, 제442조~제444조, 제448조, 제450조, 제451조, 제297조, 제298조, 제619조, 제620조, 제624조, 제625조, 제630조, 제631조**에서 정한 기준

불임3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보고서 작성요령

- ① 안전·보건진단보고서에 준하여 작성하되,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용이 모두 포함되도록 작성
- ② 평가대상은 하청 수급업체에서 수행하게 되는 도급작업으로서 도급승인 후 수행예정인 작업임에 유념^{*}하여 평가를 실시할 것
 - * 안전·보건진단은 통상 작업자가 투입되어 작업이 수행중인 상황에서 실시되는 반면,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는 작업이 수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므로 도급승인 기준을 제외한 일부 평가항목은 작업자가 투입될 경우 조치되어야 할 구체적 개선계획내용으로 세부평가내용에 포함시켜야 함
- ③ 도급승인 기준(안전보건규칙) 관련사항, 산안법 및 동법 시행규칙 관련사항 및 안전보건진단 관련사항으로 명확히 구분되게 작성
- ④ 평가 시 지적된 문제점별 개선방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문제점이 일목 요연하게 정리되어 나타나도록 평가보고서상에 기술

불임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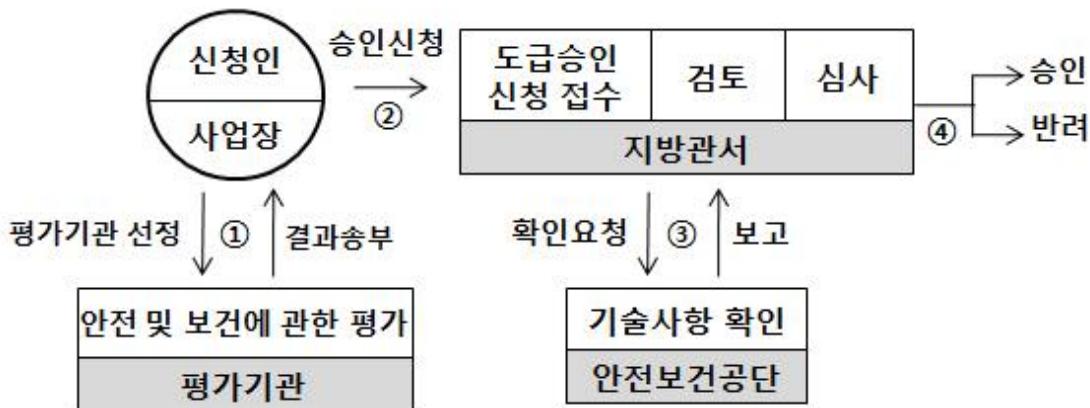
도급승인 절차 안내문[신청인 배포용, 예시]

유해·위험작업의 도급승인 절차 안내

○ 도급승인 절차

- 도급승인 신청 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먼저 지정된 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함
- * 신청 시 첨부서류 : ①도급대상 작업 공정 관련 서류 일체, ②도급작업 안전 보건관리계획서, ③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변경승인은 해당되지 않음)
- ** 「업무위탁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의거 현재 안전보건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대한 산업보건협회, 한국건설안전협회 4개 기관이 지정되어 있으나, 계속 확대할 계획임

< 참고 : 도급승인 단계별 세부절차 >



○ 신청인 유의사항

- 신청인은 평가결과가 '부적정'인 경우 도급승인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여 평가결과가 적정이 되도록 노력해야 함
※ 신청인은 「유해작업 도급인가시 안전·보건평가수수료」(고용부 고시 제2016-9호)에 따라 산정한 소정의 평가수수료를 평가기관에 납부하여야 함(산업안전보건법 제166조제1항)
- 신청인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로부터 도급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평가결과(평가보고서) 또는 기술사항 확인 결과로부터 지적된 지적한 문제점에 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개선지도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 개선하여야 합니다.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개선지도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 제59조 위반이 아닌 다른 법조항 위반이 발생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도급승인 심사를 위한
기술사항 확인결과 보고**

사업장명	
확인일	
확인자	소속 : 성명 : (서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OO 지역본부(00지사)**

1. 도급 사업장 및 도급 신청 현황

도급 사업장 현황			
명칭			
소재지			
업종		대표자	
근로자수		전화번호	

도급신청현황			
공정명		도급기간	. . . ~ . . .
유해작업명 ^{주1)} (최대 유해화학 물질량(월))	()	해당 근로자수 ^{주2)}	

- 주1) ①도금작업 ②수은·납·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작업 ③허가대상물질 제조·사용작업 ④황산·불화수소·질산·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2) 해당 도급작업에 상시 종사할 예정인 수급인 근로자수

2. 확인 결과 요약

안전보건평가의 유효성 확인	
- 평가기관의 적법성(해당 평가종류에 대한 평가위탁기관 지정여부)	적합() 부적합()
- 평가시점의 유효성(평가 후 도급 작업·시설의 변경여부 확인)	적합() 부적합()

기술적 사항 확인	
- 도급승인의 기준	적합() 부적합()
- 도급사업주 의무사항(산안법 및 동법 시행규칙 관련 사항)	적합() 개선필요()
- 기타사항(안전보건진단 관련 사항)	적합() 개선필요()

의견(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

* 필요시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

3. 기술적 사항 확인표(안전보건평가결과 확인 등)

■ 대상작업 : 도급작업 / 수은 · 납 · 카드뮴의 제련 · 주입 · 가공 · 가열작업

도급승인의 기준

상태 [적합 : ○, 부적합 : ×, 해당무 : -]

안전보건규칙 안전보건평가항목	점검내용	상태	점검결과
제5조	[오염된 바닥의 세척 등]		
2. 유해위험요인	○작업장 바닥·벽 세척·소독 여부		
	○불침투성 재료의 바닥·벽 여부		
제7조	[채광 및 조명]		
2. 유해위험요인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아니하는 방법		
제8조	[조도]		
2. 유해위험요인	○작업강도별 적정조도 유지 여부		
제10조	[작업장의 창문]		
2. 유해위험요인	○작업 또는 통행 방해 여부		
	○보조도구 사용 조치 여부		
제11조	[작업장의 출입구]		
2. 유해위험요인	○출입구 설치기준 준수 여부		
제17조	[비상구의 설치]		
2. 유해위험요인	○비상구 설치기준 준수 여부		
	○비상구 사용상태 유지 여부		
제19조	[경보용 설비 등]		
2. 유해위험요인	○경보용 설비 또는 기구 설치 여부		
제21조	[통로의 조명]		
2. 유해위험요인	○채광 또는 조명시설 설치 여부		
제22조	[통로의 설치]		
2. 유해위험요인	○통로 설치 및 사용상태 유지 여부		
	○통로표시 여부		
	○장애물 제거 여부		
제33조	[보호구의 관리]		
3. 보호구 등	○호흡용 보호구 상시점검 및 이상이 있는 것에 대한 보수 교체		
제72조	[후드]		
2. 유해위험요인	○후드 설치기준 준수 여부		

안전보건규칙 안전보건평가항목	점검내용	상태	점검결과
제73조	[덕트]		
2. 유해위험요인	○덕트 형태, 청소, 연결부위 등		
제74조	[배풍기]		
2. 유해위험요인	○배풍기 설치, 위치 등		
제75조	[배기구]		
2. 유해위험요인	○배출된 분진의 재유입 방지		
제76조	[배기의 처리]		
2. 유해위험요인	○분진 배출장치에 흡수, 연소, 집진 및 그 밖의 공기정화장치 설치 여부		
제77조	[전체환기장치]		
2. 유해위험요인	○전체환기장치 설치기준 준수 여부		
제78조	[환기장치의 가동]		
2. 유해위험요인	○정상적 가동 여부 ○조정판 설치로 환기 방해기류 배제여부		
제79조	[휴게시설]		
6. 기타 보건관리 개선	○휴게시설의 설치 여부 ○유해물질 발산장소나 취급장소와 격리		
제81조	[수면장소 등의 설치]		
6. 기타 보건관리 개선	○야간작업자 필요시 수면 장소 남녀구분설치 ○필요용품 비치 및 청소, 세탁 및 소독실시여부		
제83조	[가스 등의 발산억제조치]		
2. 유해위험요인	○발산억제, 밀폐,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환기장치 설치		
제84조	[공기의 부피와 환기]		
2. 유해위험요인	○1인당 10세제곱미터 이상 확보 ○개방창은 바닥면적의 1/20이상 확보 ○섭씨 10도 이하에서 1m/초 이상 기류에 닿지 않도록 조치 여부		
제85조	[잔재물 등의 처리]		
2. 유해위험요인	○중화, 침전 여과 그 밖의 방법으로 처리 여부 ○병원체의 소독 살균 그 밖의 방법으로 처리여부 ○잔재물 등의 유해·위험성 등의 정보를 위탁처리자에게 제공여부		

안전보건규칙	점검내용	상태	점검결과
안전보건평가항목			
제225조	[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시의 조치]		
2. 유해위험요인	○폭발·화재·누출 방지조치 여부		
제232조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		
2. 유해위험요인	○통풍·환기 및 분진 제거조치 여부 ○가스검지 및 경보장치 설치 여부		
제299조	[독성이 있는 물질의 누출 방지]		
2. 유해위험요인	○급성독성물질 누출방지 조치 여부		
제301조	[전기 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2. 유해위험요인	○충전부분에 대한 감전 방호조치 여부 ○밀폐공간 작업시 충전부에 덮개·방책· 절연 칸막이 설치 ○개폐문, 경첩이 있는 패널 고정 여부		
제302조	[전기 기계·기구의 접지]		
2. 유해위험요인	○누전에 의한 감전방지를 위한 접지 여부 ○특별고압 전기 취급장소에서 지락사고 발생시 감전위험 감소조치 여부 ○접지설비의 적정상태 유지여부 점검 및 이상 발견시 보수·재설치		
제303조	[전기 기계·기구의 적정설치 등]		
2. 유해위험요인	○전기 기계·기구 설치기준 준수 여부 ○공인된 인증기관의 인증 여부 및 제품 설명서에 따른 설치·사용 여부		
제304조	[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2. 유해위험요인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설치 여부 ○누전차단기 설치 곤란시, 접지선의 연결 및 접속부 상태 점검 여부 ○누전차단기 작동상태 점검 및 이상시 보수·교환 여부 ○누전차단기 접속시 기준 준수 여부		
제305조	[과전류 차단장치]		
2. 유해위험요인	○과전류 차단장치 설치 여부		

상태 [적합 : ○, 부적합 : ×, 해당무 : -]

안전보건규칙 안전보건평가항목	점검내용	상태	점검결과
제422조	[관리대상유해물질과 관계되는 설비]		
2. 유해위험요인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 설치		
제429조	[국소배기장치의 성능]		
2. 유해위험요인	○적정 제어풍속 유지		
제430조	[전체환기장치의 성능]		
2. 유해위험요인	○적정 필요환기량 유지 ○배풍기 또는 덕트 위치		
제431조	[작업장의 바닥]		
2. 유해위험요인	○바닥의 불침투성 재료 사용 및 청소가 쉬운 구조 여부		
제432조	[부식의 방지조치]		
2. 유해위험요인	○녹슬지 않는 재료로 만드는 등 필요한 조치여부		
제433조	[누출의 방지 조치]		
2. 유해위험요인	○뚜껑, 후렌지, 벨브 및 코크 등의 접합부에 누출방지 조치 여부		
제434조	[경보설비 등]		
2. 유해위험요인	○경보설비 설치 또는 경보용기구 비치 여부 ○새는 경우를 대비하여 물질의 제거를 위한 약제, 기구, 설비 의 비치, 설치		
제435조	[긴급차단장치의 설치 등]		
2. 유해위험요인	○이상화학 반응시 대비 조치 여부 ○밸브, 코크의 정상상태 유지 및 색깔 구분 등 필요 조치 ○내보내는 장치의 밀폐식 구조 또는 안전한 처리가능 구조 여부		

상태 [적합 : ○, 부적합 : ×, 해당무 : -]

안전보건규칙 안전보건평가항목	점검내용	상태	점검결과
제442조	[명칭 등의 게시]		
4. 사용·보관·저장, MSDS 작성·교육·경고표시 적정성	○명칭,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여부		
제443조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저장]		
4. 사용·보관·저장, MSDS 작성·교육·경고표시 적정성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시 ○일정장소 지정·저장 여부		
제444조	[빈 용기 등의 관리]		
4. 사용·보관·저장, MSDS 작성·교육·경고표시 적정성	○사용한 용기 또는 포장에 대한 밀폐 또는 실외 일정장소 지정·보관		
제448조	[세척시설 등]		
6. 기타 보건관리 개선	○세면·목욕·세탁·건조시설 설치 및 필요한 용품·용구 비치 여부 ○세척시설 등의 작업복과 평상복 구분 보관 가능 구조 여부		
제450조	[호흡용보호구의 지급 등]		
3. 보호구 등	○송기마스크 지급 착용 ○송기마스크 또는 방독마스크 지급착용 ○공기공급장치 부착 ○질병감염 우려시 전용 보호구 지급		
제451조	[보호복 등의 비치 등]		
3. 보호구 등	○불침투성 보호복, 보호장갑, 보호 장화, 피부보호용 도포제 비치 ○보안경 지급 착용 ○세면, 목욕 등에 필요한 세척시설		
제513조	[소음 감소 조치]		
2. 유해위험요인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 장소에 소음 감소조치 실시 여부		

도급사업주 의무사항(산안법 및 동법 시행규칙 관련 사항)

상태 [적합 : ○, 개선필요 : ×, 해당무 : -]

관련 근거	점검내용	상태	점검결과
안전보건평가항목			
시행규칙 별표12	[작업표준의 적절성]		
1. 작업조건·작업방법	○작업안전수칙, 작업절차서		
시행규칙 별표12	[현장의 작업환경과 작업방법의 적절성]		
1. 작업조건·작업방법	○안전점검표, 안전인증서, 검사필증 ○작업계획서		
시행규칙 별표12	[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		
4. 사용·보관·저장, MSDS 작성·교육·경고표시 적정성	○MSDS 제공 여부		
시행규칙 별표12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및 교육]		
4. 사용·보관·저장, MSDS 작성·교육·경고표시 적정성	○MSDS 게시 및 교육 여부		
시행규칙 별표12	[경고표시]		
4. 사용·보관·저장, MSDS 작성·교육·경고표시 적정성	○MSDS 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여부		
시행규칙 별표12	[안전보건교육 장소 및 자료 제공]		
4. 사용·보관·저장, MSDS 작성·교육·경고표시 적정성	○교육장소·자료 현황 및 제공 계획		
시행규칙 별표12	[안전보건 정보제공 등]		
4. 사용·보관·저장, MSDS 작성·교육·경고표시 적정성	○자료준비사항 및 제공계획		
시행규칙 별표12	[관리감독자]		
5.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능력의 적절성	○관리감독자 선임 여부		

시행규칙 별표12	[안전관리자]		
5.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능력의 적절성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시행규칙 별표12	[보건관리자]		
5.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능력의 적절성	○보건관리자 선임 여부		
시행규칙 별표12	[안전보건관리담당자]		
5.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능력의 적절성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여부		
시행규칙 별표12	[일반건강진단]		
5.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능력의 적절성	○일반건강진단 실시 여부		
시행규칙 별표12	[특수건강진단 등]		
5.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능력의 적절성	○특수건강진단 실시 여부		
시행규칙 별표12	[특별안전보건교육]		
5.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능력의 적절성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3. 기술적 사항 확인표(안전보건평가결과 확인 등)

■ 대상작업 : 허가대상 둘질 제조 또는 사용 작업

도급승인의 기준

상태 [적합 : ○, 부적합 : ×, 해당무 : -]

안전보건규칙 안전보건평가항목	점검내용	상태	점검결과
제5조	[오염된 바닥의 세척 등]		
2. 유해위험요인	○작업장 바닥·벽 세척·소독 여부		
	○불침투성 재료의 바닥·벽 여부		
제7조	[채광 및 조명]		
2. 유해위험요인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아니하는 방법		
제8조	[조도]		
2. 유해위험요인	○작업장도별 적정조도 유지 여부		
제10조	[작업장의 창문]		
2. 유해위험요인	○작업 또는 통행 방해 여부		
	○보조도구 사용 조치 여부		
제11조	[작업장의 출입구]		
2. 유해위험요인	○출입구 설치기준 준수 여부		
제17조	[비상구의 설치]		
2. 유해위험요인	○비상구 설치기준 준수 여부		
	○비상구 사용상태 유지 여부		
제19조	[경보용 설비 등]		
2. 유해위험요인	○경보용 설비 또는 기구 설치 여부		
제21조	[통로의 조명]		
2. 유해위험요인	○채광 또는 조명시설 설치 여부		
제22조	[통로의 설치]		
2. 유해위험요인	○통로 설치 및 사용상태 유지 여부		
	○통로표시 여부		
	○장애물 제거 여부		
제33조	[보호구의 관리]		
3. 보호구 등	○호흡용 보호구 상시점검 및 이상이 있는 것에 대한 보수 교체		
제72조	[후드]		
2. 유해위험요인	○후드 설치기준 준수 여부		

안전보건규칙 안전보건평가항목	점검내용	상태	점검결과
제73조	[덕트]		
2. 유해위험요인	○덕트 형태, 청소, 연결부위 등		
제74조	[배풍기]		
2. 유해위험요인	○배풍기 설치, 위치 등		
제75조	[배기구]		
2. 유해위험요인	○배출된 분진의 재유입 방지		
제76조	[배기의 처리]		
2. 유해위험요인	○분진 배출장치에 흡수, 연소, 집진 및 그 밖의 공기정화장치 설치 여부		
제77조	[전체환기장치]		
2. 유해위험요인	○전체환기장치 설치기준 준수 여부		
제78조	[환기장치의 가동]		
2. 유해위험요인	○정상적 가동 여부 ○조정판 설치로 환기 방해기류 배제여부		
제79조	[휴게시설]		
6. 기타 보건관리 개선	○휴게시설의 설치 여부 ○유해물질 발산장소나 취급장소와 격리		
제81조	[수면장소 등의 설치]		
6. 기타 보건관리 개선	○야간작업자 필요시 수면 장소 남녀구분설치 ○필요용품 비치 및 청소, 세탁 및 소독실시여부		
제83조	[가스 등의 발산억제조치]		
2. 유해위험요인	○발산억제, 밀폐,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환기장치 설치		
제84조	[공기의 부피와 환기]		
2. 유해위험요인	○1인당 10세제곱미터 이상 확보 ○개방창은 바닥면적의 1/20이상 확보 ○섭씨 10도 이하에서 1m/초 이상 기류에 닿지 않도록 조치 여부		
제85조	[잔재물 등의 처리]		
2. 유해위험요인	○중화, 침전 여과 그 밖의 방법으로 처리 여부 ○병원체의 소독 살균 그 밖의 방법으로 처리여부 ○잔재물 등의 유해·위험성 등의 정보를 위탁처리자에게 제공여부		

상태 [적합 : ○, 부적합 : ×, 해당무 : -]

안전보건규칙	점검내용	상태	점검결과
안전보건평가항목			
제225조	[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시의 조치]		
2. 유해위험요인	○폭발·화재·누출 방지조치 여부		
제232조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		
2. 유해위험요인	○통풍·환기 및 분진 제거조치 여부 ○가스검지 및 경보장치 설치 여부		
제299조	[독성이 있는 물질의 누출 방지]		
2. 유해위험요인	○급성독성물질 누출방지 조치 여부		
제301조	[전기 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2. 유해위험요인	○충전부분에 대한 감전 방호조치 여부 ○밀폐공간 작업시 충전부에 덮개·방책· 절연 칸막이 설치 ○개폐문, 경첩이 있는 패널 고정 여부		
제302조	[전기 기계·기구의 접지]		
2. 유해위험요인	○누전에 의한 감전방지를 위한 접지 여부 ○특별고압 전기 취급장소에서 지락사고 발생시 감전위험 감소조치 여부 ○접지설비의 적정상태 유지여부 점검 및 이상 발견시 보수·재설치		
제303조	[전기 기계·기구의 적정설치 등]		
2. 유해위험요인	○전기 기계·기구 설치기준 준수 여부 ○공인된 인증기관의 인증 여부 및 제품설명서에 따른 설치·사용 여부		
제304조	[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2. 유해위험요인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설치 여부 ○누전차단기 설치 곤란시, 접지선의 연결 및 접속부 상태 점검 여부 ○누전차단기 작동상태 점검 및 이상시 보수·교환 여부 ○누전차단기 접속시 기준 준수 여부		
제305조	[과전류 차단장치]		
2. 유해위험요인	○과전류 차단장치 설치 여부		

안전보건규칙 안전보건평가항목	점검내용	상태	점검결과
제453조	[설비기준 등]		
2. 유해위험요인	○격리, 바닥의 불침투성 여부		
	○원재료 신체 접촉 가능 여부		
	○반응조 접합부 밀폐 여부		
	○가동중인 선별기 또는 진공여과기 내부 점검시 밀폐상태에서 내부 점검 가능 여부		
	○분말상의 허가대상물질의 흘날림방지 대책 여부		
	○밀폐설비 등 국소배기장치 후드 설치 여부		
제454조	[국소배기장치의 설치 · 성능]		
2. 유해위험요인	○제어풍속 준수		
제455조	[배출액의 처리]		
2. 유해위험요인	○배출액의 적절한 처리 여부		
제459조	[명칭 등의 게시]		
4. 사용·보관·저장, MSDS 작성·교육·경고표시 적정성	○제조 또는 사용 작업장 보기쉬운 장소에 게시		
제461조	[용기 등]		
4. 사용·보관·저장, MSDS 작성·교육·경고표시 적정성	○견고한 용기 사용 또는 단단한 포장		
	○용기 또는 포장에 해당물질의 명칭, 과 취급상의 주의사항 표시		
	○지정 장소 보관		
	○사용한 용기 또는 포장 밀폐 또는 실외 일정한 장소에 지정·보관		
제463조	[잠금장치 등]		
4. 사용·보관·저장, MSDS 작성·교육·경고표시 적정성	○잠금장치 설치 등 관계자와 출입금지 조치 여부		
제464조	[목욕설비 등]		
6. 기타 보건관리 개선	○탈의실, 목욕실 및 쟁의실 등 설치		
	○순서대로 작업장 출입		
	○작업복, 보호구 등 오염제거 세탁		

상태 [적합 : ○, 부적합 : ×, 해당무 : -]

안전보건규칙 안전보건평가항목	점검내용	상태	점검결과
제465조	[긴급세척시설 등]		
6. 기타 보건관리 개선	○긴급세척시설 및 세안설비 설치후, 맑은 물이 나오도록 유지		
제466조	[누출시 조치]		
4. 사용·보관·저장, MSDS 작성·교육·경고표시 적정성	○샐 경우, 흘날리지 않는 방법으로 제거		
제469조	[방독마스크의 지급 등]		
3. 보호구 등	○방독마스크 지급 착용 여부		
	○방독마스크 보관함 비치 여부		
제470조	[보호복 등의 관리]		
3. 보호구 등	○불침투성 보호복, 보호장갑, 보호 장화 및 피부보호용 약품 구비		
제513조	[소음 감소 조치]		
2. 유해위험요인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 장소에 소음 감소조치 실시 여부		

안전보건규칙 안전보건평가항목	점검내용	상태	점검결과
[본 페이지의 내용은 베릴륨 제조·사용 작업에 한하여 추가 점검]			
제471조	[설비기준]		
2. 유해위험요인	○베릴륨 가열용착, 가열탈착 설비 격리 설치 및 국소배기장치 설치 여부		
	○베릴륨 제조설비 밀폐식구조 또는 상방·하방 및 측방 덮개 설치		
	○점검시 덮여진 상태로 점검 관찰가능 여부		
	○제조·사용 작업장소 바닥·벽 불침 투성재료 사용여부		
	○녹은 베릴륨으로 베릴륨 합금 제조 작업장소에 국소배기장치 설치 여부		
	○수산화베릴륨으로 고순도 산화베릴륨 제조설비 사양 충족 여부		
	○베릴륨 공급·이송·운반시 등 신체 접촉 방지조치		
	○분말상 베릴륨 사용시, 격리실에서 원격조정 가능여부		
	○분말상 베릴륨을 계량·용기에 넣거나 꺼내는 작업, 포장작업시 신체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조치		
제472조	[아크로에 대한 조치]		
2. 유해위험요인	○모래차단막 설치		
제473조	[가열 용착 제품 등의 추출]		
2. 유해위험요인	○가열용착 또는 가열탈착 베릴륨 꺼내는 방법의 적절성(흡입방법)		
제474조	[가열용착 제품 등의 파쇄]		
2. 유해위험요인	○격리된 실내에서 파쇄 및 국소배기 장치 설치		

* 베릴륨의 경우, 법 제118조(유해·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에 따라 제조·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도급승인 심사 가능하며, 위반사항 적발시 해당 법령에 따라 별도 조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168조제1호)

도급사업주 의무사항(산안법 및 동법 시행규칙 관련 사항)

상태 [적합 : ○, 개선필요 : ×, 해당무 : -]

관련 근거	점검내용	상태	점검결과
안전보건평가항목			
시행규칙 별표12	[작업표준의 적절성]		
1. 작업조건·작업방법	○작업안전수칙, 작업절차서		
시행규칙 별표12	[현장의 작업환경과 작업방법의 적절성]		
1. 작업조건·작업방법	○안전점검표, 안전인증서, 검사필증 ○작업계획서		
시행규칙 별표12	[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		
4. 사용·보관·저장, MSDS 작성·교육·경고표시 적정성	○MSDS 제공 여부		
시행규칙 별표12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및 교육]		
4. 사용·보관·저장, MSDS 작성·교육·경고표시 적정성	○MSDS 게시 및 교육 여부		
시행규칙 별표12	[경고표시]		
4. 사용·보관·저장, MSDS 작성·교육·경고표시 적정성	○MSDS 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여부		
시행규칙 별표12	[안전보건교육 장소 및 자료 제공]		
4. 사용·보관·저장, MSDS 작성·교육·경고표시 적정성	○교육장소·자료 현황 및 제공 계획		
시행규칙 별표12	[안전보건 정보제공 등]		
4. 사용·보관·저장, MSDS 작성·교육·경고표시 적정성	○자료준비사항 및 제공계획		
시행규칙 별표12	[관리감독자]		
5.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능력의 적절성	○관리감독자 선임 여부		

시행규칙 별표12	[안전관리자]		
5.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능력의 적절성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시행규칙 별표12	[보건관리자]		
5.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능력의 적절성	○보건관리자 선임 여부		
시행규칙 별표12	[안전보건관리담당자]		
5.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능력의 적절성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여부		
시행규칙 별표12	[일반건강진단]		
5.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능력의 적절성	○일반건강진단 실시 여부		
시행규칙 별표12	[특수건강진단 등]		
5.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능력의 적절성	○특수건강진단 실시 여부		
시행규칙 별표12	[특별안전보건교육]		
5.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능력의 적절성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3. 기술적 사항 확인표(안전보건평가결과 확인 등)

■ 대상작업 : 황산·불화수소·질산·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도급승인의 기준

상태 [적합 : ○, 부적합 : ×, 해당무 : -]

안전보건규칙 안전보건평가항목	점검내용	상태	점검결과
제5조	[오염된 바닥의 세척 등]		
2. 유해위험요인	○작업장 바닥·벽 세척·소독 여부		
	○불침투성 재료의 바닥·벽 여부		
제7조	[채광 및 조명]		
2. 유해위험요인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아니하는 방법		
제8조	[조도]		
2. 유해위험요인	○작업강도별 적정조도 유지 여부		
제10조	[작업장의 창문]		
2. 유해위험요인	○작업 또는 통행 방해 여부		
	○보조도구 사용 조치 여부		
제11조	[작업장의 출입구]		
2. 유해위험요인	○출입구 설치기준 준수 여부		
제17조	[비상구의 설치]		
2. 유해위험요인	○비상구 설치기준 준수 여부		
	○비상구 사용상태 유지 여부		
제19조	[경보용 설비 등]		
2. 유해위험요인	○경보용 설비 또는 기구 설치 여부		
제21조	[통로의 조명]		
2. 유해위험요인	○채광 또는 조명시설 설치 여부		
제22조	[통로의 설치]		
2. 유해위험요인	○통로 설치 및 사용상태 유지 여부		
	○통로표시 여부		
	○장애물 제거 여부		
제33조	[보호구의 관리]		
3. 보호구 등	○호흡용 보호구 상시점검 및 이상이 있는 것에 대한 보수 교체		

안전보건규칙 안전보건평가항목	점검내용	상태	점검결과
제42조	[추락의 방지]		
2. 유해위험요인	○작업발판 설치 여부		
	○추락방호망 설치 및 성능적합 여부		
제43조	[개구부 등의 방호조치]		
2. 유해위험요인	○난간 등 적정 설치 여부		
	○추락방호망 설치 또는 안전대 착용		
제44조	[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2. 유해위험요인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안전대 및 부속설비 이상유무 점검		
제72조	[후드]		
2. 유해위험요인	○후드 설치기준 준수 여부		
제73조	[덕트]		
2. 유해위험요인	○덕트 형태, 청소, 연결부위 등		
제74조	[배풍기]		
2. 유해위험요인	○배풍기 설치, 위치 등		
제75조	[배기구]		
2. 유해위험요인	○배출된 분진의 재유입 방지		
제76조	[배기의 처리]		
2. 유해위험요인	○분진 배출장치에 흡수, 연소, 집진 및 그 밖의 공기정화장치 설치 여부		
제77조	[전체환기장치]		
2. 유해위험요인	○전체환기장치 설치기준 준수 여부		
제78조	[환기장치의 가동]		
2. 유해위험요인	○정상적 가동 여부		
	○조정판 설치로 환기 방해기류 배제여부		
제79조	[휴게시설]		
6. 기타 보건관리 개선	○휴게시설의 설치 여부		
	○유해물질 발산장소나 취급장소와 격리		
제81조	[수면장소 등의 설치]		
6. 기타 보건관리 개선	○야간작업자 필요시 수면 장소 남녀구분설치		
	○필수용품 비치 및 청소, 세탁 및 소독실시여부		

안전보건규칙 안전보건평가항목	점검내용	상태	점검결과
제83조	[가스 등의 발산억제조치]		
2. 유해위험요인	○발산억제, 밀폐,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환기장치 설치		
제84조	[공기의 부피와 환기]		
2. 유해위험요인	○1인당 10세제곱미터 이상 확보		
	○개방창은 바닥면적의 1/20이상 확보		
	○섭씨 10도 이하에서 1m/초 이상 기류에 닿지 않도록 조치 여부		
제85조	[잔재물 등의 처리]		
2. 유해위험요인	○중화, 침전 여과 그 뒤의 방법으로 처리 여부		
	○병원체의 소독, 살균 그 뒤의 방법으로 처리여부		
	○잔재물 등의 유해·위험성 등의 정보를 위탁처리자에게 제공여부		
제225조	[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시의 조치]		
2. 유해위험요인	○폭발·화재·누출 방지조치 여부		
제232조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		
2. 유해위험요인	○통풍·환기 및 분진 제거조치 여부		
	○가스검지 및 경보장치 설치 여부		
제297조	[부식성액체 압송설비]		
2. 유해위험요인	○압송설비 조치사항 준수 여부		
제298조	[공기외의 가스 사용 제한]		
2. 유해위험요인	○압축가스 종류의 적정성		
제299조	[독성이 있는 물질의 누출 방지]		
2. 유해위험요인	○급성독성물질 누출방지 조치 여부		
제301조	[전기 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2. 유해위험요인	○충전부분에 대한 감전 방호조치 여부		
	○밀폐공간 작업시 충전부에 덮개·방책·절연 칸막이 설치		
	○개폐문, 경첩이 있는 패널 고정 여부		

안전보건규칙 안전보건평가항목	점검내용	상태	점검결과
제302조	[전기 기계·기구의 접지]		
2. 유해위험요인	○누전에 의한 감전방지를 위한 접지 여부		
	○특별고압 전기 취급장소에서 지락사고 발생시 감전위험 감소조치 여부		
	○접지설비의 적정상태 유지여부 점검 및 이상 발견시 보수·재설치		
제303조	[전기 기계·기구의 적정설치 등]		
2. 유해위험요인	○전기 기계·기구 설치기준 준수 여부		
	○공인된 인증기관의 인증 여부 및 제품설명서에 따른 설치·사용 여부		
제304조	[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2. 유해위험요인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설치 여부		
	○누전차단기 설치 곤란시, 접지선의 연결 및 접속부 상태 점검 여부		
	○누전차단기 작동상태 점검 및 이상시 보수·교환 여부		
	○누전차단기 접속시 기준 준수 여부		
제305조	[과전류 차단장치]		
2. 유해위험요인	○과전류 차단장치 설치 여부		
제422조	[관리대상유해물질과 관계되는 설비]		
2. 유해위험요인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 설치		
제429조	[국소배기장치의 성능]		
2. 유해위험요인	○적정 제어풍속 유지		
제430조	[전체환기장치의 성능]		
2. 유해위험요인	○적정 필요환기량 유지 ○배풍기 또는 덕트 위치		
제431조	[작업장의 바닥]		
2. 유해위험요인	○바닥의 불침투성 재료 사용 및 청소가 쉬운 구조 여부		

상태 [적합 : ○, 부적합 : ×, 해당무 : -]

안전보건규칙 안전보건평가항목	점검내용	상태	점검결과
제432조	[부식의 방지조치]		
2. 유해위험요인	○녹슬지 않는 재료로 만드는 등 필요한 조치여부		
제433조	[누출의 방지 조치]		
2. 유해위험요인	○뚜껑, 후렌지, 밸브 및 코크 등의 접합부에 누출방지 조치 여부		
제434조	[경보설비 등]		
2. 유해위험요인	○경보설비 설치 또는 경보용기구 비치 여부 ○새는 경우를 대비하여 물질의 제거를 위한 약제, 기구, 설비 의 비치, 설치		
제435조	[긴급차단장치의 설치 등]		
2. 유해위험요인	○이상화학 반응시 대비 조치 여부 ○밸브, 코크의 정상상태 유지 및 색깔 구분 등 필요 조치 ○내보내는 장치의 밀폐식 구조 또는 안전한 처리가능 구조 여부		
제442조	[명칭 등의 게시]		
4. 사용·보관·저장, MSDS 작성·교육·경고표시 적정성	○명칭,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여부		
제443조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저장]		
4. 사용·보관·저장, MSDS 작성·교육·경고표시 적정성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시 ○일정장소 지정·저장 여부		
제444조	[빈 용기 등의 관리]		
4. 사용·보관·저장, MSDS 작성·교육·경고표시 적정성	○사용한 용기 또는 포장에 대한 밀폐 또는 실외 일정장소 지정·보관		
제448조	[세척시설 등]		
6. 기타 보건관리 개선	○세면·목욕·세탁·건조시설 설치 및 필요한 용품·용구 비치 여부 ○세척시설 등의 작업복과 평상복 구분 보관 가능 구조 여부		

상태 [적합 : ○, 부적합 : ×, 해당무 : -]

안전보건규칙 안전보건평가항목	점검내용	상태	점검결과
제450조	[호흡용보호구의 지급 등]		
3. 보호구 등	○송기마스크 지급 착용		
	○송기마스크 또는 방독마스크 지급착용		
	○공기공급장치 부착		
	○질병감염 우려시 전용 보호구 지급		
제451조	[보호복 등의 비치 등]		
3. 보호구 등	○불침투성 보호복, 보호장갑, 보호 장화, 피부보호용 도포제 비치		
	○보안경 지급 착용		
	○세면, 목욕 등에 필요한 세척시설		
제513조	[소음 감소 조치]		
2. 유해위험요인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 장소에 소음 감소조치 실시 여부		
제619조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시행 등]		
2. 유해위험요인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밀폐공간 작업전 조치사항 확인		
	○밀폐공간 작업전 조치사항 출입구 게시		
제620조	[환기 등]		
2. 유해위험요인	○작업전, 중 환기 실시 여부 또는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 착용 여부		
제624조	[안전대 등]		
3. 보호구 등	○밀폐공간 작업 추락 우려시, 안전대, 구명밧줄, 공기호흡기(송기마스크) 착용		
	○안전대, 구명밧줄 착용설비 설치		
제625조	[대피용 기구의 비치]		
3. 보호구 등	○비상시 피난 및 구출에 필요한 기구 비치		
제630조	[불활성기체의 누출]		
2. 유해위험요인	○불활성기체 내보내는 설비 작업시 조치사항 준수 여부		
제631조	[불활성기체의 유입 방지]		
2. 유해위험요인	○불활성기체 잔류 방지조치 여부		

도급사업주 의무사항(산안법 및 동법 시행규칙 관련 사항)

상태 [적합 : ○, 개선필요 : ×, 해당무 : -]

관련 근거	점검내용	상태	점검결과
안전보건평가항목			
시행규칙 별표12	[작업표준의 적절성]		
1. 작업조건·작업방법	○작업안전수칙, 작업절차서		
시행규칙 별표12	[현장의 작업환경과 작업방법의 적절성]		
1. 작업조건·작업방법	○안전점검표, 안전인증서, 검사필증 ○작업계획서		
시행규칙 별표12	[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		
4. 사용·보관·저장, MSDS 작성·교육·경고표시 적정성	○MSDS 제공 여부		
시행규칙 별표12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및 교육]		
4. 사용·보관·저장, MSDS 작성·교육·경고표시 적정성	○MSDS 게시 및 교육 여부		
시행규칙 별표12	[경고표시]		
4. 사용·보관·저장, MSDS 작성·교육·경고표시 적정성	○MSDS 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여부		
시행규칙 별표12	[안전보건교육 장소 및 자료 제공]		
4. 사용·보관·저장, MSDS 작성·교육·경고표시 적정성	○교육장소·자료 현황 및 제공 계획		
시행규칙 별표12	[안전보건 정보제공 등]		
4. 사용·보관·저장, MSDS 작성·교육·경고표시 적정성	○자료준비사항 및 제공계획		
시행규칙 별표12	[관리감독자]		
5.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능력의 적절성	○관리감독자 선임 여부		

시행규칙 별표12	[안전관리자]		
5.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능력의 적절성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시행규칙 별표12	[보건관리자]		
5.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능력의 적절성	○보건관리자 선임 여부		
시행규칙 별표12	[안전보건관리담당자]		
5.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능력의 적절성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여부		
시행규칙 별표12	[일반건강진단]		
5.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능력의 적절성	○일반건강진단 실시 여부		
시행규칙 별표12	[특수건강진단 등]		
5.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능력의 적절성	○특수건강진단 실시 여부		
시행규칙 별표12	[특별안전보건교육]		
5.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능력의 적절성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유해·위험작업 도급승인
심사보고서**

사업장명	
심사일	
심사자	소속 : 성명 : (서명)

OO지방고용노동청
O O 지청

1. 도급 사업장 현황

도급 사업장 현황			수급 사업체 현황		
명칭			명칭		
소재지			소재지		
업종		대표자		업종	
근로자수			근로자수		
전화번호			전화번호		
도급신청 현황	공정명 유해작업명 ^{주1)} (최대 유해화학 물질량(월))		도급기간 해당근로자수 ^{주2)} ()	도급기간 해당근로자수 ^{주2)} ()	... ~ ...

주1) 도급작업 / 수은·납·카드뮴 제련·주입·가공·가열작업 / 허가대상유해물질 제조·사용작업 /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 취급설비 개조·분해·해체·철거작업 또는 해당 설비 내부 작업

2) 해당 도급작업에 상시 종사할 예정인 수급인 근로자수

2. 심사항목 및 결과

도급승인 신청서류 검토	적합() 개선필요()
- 도급대상 작업의 공정 관련 서류 적정여부	적합() 개선필요()
- 도급작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적정여부	적합() 개선필요()
※ 도급승인 신청서류가 부적정하여 개선이 필요한 경우, 보완된 자료를 다시 받아 재심사 의견(서류보완 등)	

안전보건평가의 유효성 검토	적합() 부적합()
- 평가기관의 적법성(해당 평가종류에 대한 평가위탁기관 지정여부)	적합() 부적합()
- 평가시점의 유효성(평가 후 도급 작업·시설의 변경여부 검토)	적합() 부적합()

기술적사항 점검	적합() 부적합()
- 도급승인의 기준	적합() 부적합()
- 도급사업주 의무사항(산안법 및 동법 시행규칙 관련 사항)	적합() 개선필요()
- 기타사항(안전보건진단 관련 사항)	적합() 개선필요()

의견(개선명령 등)

최종 판정	적합() 부적합()
종합의견	